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84,593,615	23,537,808
일반회계	692,328,441	20,769,853
특별회계	92,265,174	2,767,955
공기업특별회계	26,309,728	789,29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309,728	789,292
기타특별회계	65,955,446	1,978,66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31,850	21,956
자활기금특별회계	468,044	14,041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606,000	228,1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0,500	6,615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892,237	56,767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237,100	7,113
수질개선특별회계	54,799,715	1,643,99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5,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